##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96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서천호

김예지 • 박충권 • 박수민

김위상 · 최수진 · 구자근

김승수 · 안상훈 · 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 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

법률 제 호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5년"을 "2028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 부칙	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u>	제2조(유효기간) <u>2028년</u> -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